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28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2 -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구합707 자동차세납부취소
원 고	A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4. 3. 19.
판 결 선 고	2024. 4.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2.(2015. 7. 1. ~ 2015. 12. 31.분)부터 2018. 12.(2018. 7. 1. ~ 2018. 12. 31.분)까지 원고에게 부과한 별지 표 기재 자동차세 합계 841,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1)]

이 유

1)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28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2년경 사업 부도로 자신의 채권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으나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등록 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5. 4. 21. ○○광역시 ○○구청에 이 사건 차량을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15. 12.(2015. 7. 1. ~ 2015. 12. 31.분)부터 2018. 12.(2018. 7. 1. ~ 2018. 12. 31.분)까지 자동차세 합계 841,120원(가산금 등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2. 2. 22. 피고로부터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한 급여채권 압류통지서를 송달받고 피고의 담당공무원과 전화상담을 한 후 신용카드로 위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2. 12.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2. 14. 이의신청 기한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각하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2.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10. 12. 이 사건 처분 중 2015. 12.(2015. 7. 1. ~ 2015. 12. 31.분)부터 2016. 6.(2016. 1. 1. ~ 2016. 6. 30.분)까지 자동차세 합계 240,320원(가산금 등 포함)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기한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2)]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28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양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주었음에도 채권자가 명의를 이전하지 않은 채 근래까지 운행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불법명의 자동차로 신고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원고에 대해 부과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렇듯 피고는 업무 착오로 수년간 위법하게 자동차세를 청구하고 이의신청 기한에 대해 원고에게 안내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원고의 이의신청 기한이 도과하였다며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2019. 12. 31.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이하 '구 지방세기본법'이라 한다) 제9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한 급여채권 압류통지서를 송달받고 피고의 담당공무원과 전화상담을 한 후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였는바, 원고가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한 2022. 2. 22.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2. 12. 13.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며,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기한 이 사건 소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2023. 10. 12. 이 사건 처분 중 2015. 12.(2015. 7. 1. ~ 2015. 12. 31.분)부터 2016. 6.(2016. 1. 1. ~ 2016. 6. 30.분)까지 자동차세 합계 240,320원(가산금 등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 부분에

2) 원고의 주장을 이와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28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직권취소된 240,320원(가산금 등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931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2015. 12.(2015. 7. 1. ~ 2015. 12. 31.분)부터 2016. 6.(2016. 1. 1. ~ 2016. 6. 30.분)까지 자동차세 합계 240,320원(가산금 등 포함)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240,320원(가산금 등 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같은 법에 따른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여 필요적 전심절차를 정하였고, 구 지방세기본법 부칙(법률 제16854호)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제98조 제3항은 2021. 1. 1.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심판청구가 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28

한편 구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의하면 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군·구세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상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필요적으로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적법한 심판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2. 2. 22. 피고로부터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한 급여채권 압류통지서를 송달받고 피고의 담당공무원과 전화상담을 한 후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하였는바, 원고가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한 2022. 2. 22.로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22. 12. 13.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그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하다. 원고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더라도 심판청구 역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2023. 2. 23.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자신이 이의신청 기간을 몰랐으므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구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28

법에 따른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사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지방세기본법 제94조 제3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90조의 이의신청 기간 및 제91조에 의한 심판청구 기간은 불변기간인바, 원고가 이의신청 기간 등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기간 등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항변도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

판사 최○○

판사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6-28

별지

<표>

연번	과세연도	월	세목	과세대상	체납액(원)	비고
1	2015	12	자동차세	(차량번호 1 생략)	120,160	○○시청
2	2016	06	자동차세	(차량번호 1 생략)	120,160	○○시청
3	2016	12	자동차세	(차량번호 1 생략)	120,160	○○시청
4	2017	06	자동차세	(차량번호 1 생략)	120,160	○○시청
5	2017	12	자동차세	(차량번호 1 생략)	120,160	○○시청
6	2018	06	자동차세	(차량번호 1 생략)	120,160	○○시청
7	2018	12	자동차세	(차량번호 1 생략)	120,160	○○시청